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29일

거창읍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오 *하	오 *하 1989-02-20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3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29
이 *무	이 *무 1968-11-03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29